#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50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임광현·강준현·황명선

김성환 • 박홍배 • 정진욱

황정아 • 전용기 • 차지호

정준호 • 윤종군 • 이기헌

박민규 · 오세희 · 김남근

허성무 • 박해철 • 이용선

김 현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기한과 자동부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예산안에 부수되는 세법개정안의 경우 사회 각계와 국회 내 정당 간 입장차이가 클 뿐 아니라 개정 내용에 따라 세입 규모의 변동성이 발생하여 국가의 재정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그리하여 '대표 없이 조세 없다'라는 세계사적 원칙은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결정 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회의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의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심사 안건임.

그런데 현행법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 라 통상적인 세법개정 절차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주로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세법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입 ·세출의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 주도로 주요 세법 심사가 이루어지 는 상황임. 그리하여 세법 심사에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못한 여건 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채 세법 개정 심사가 졸속으 로 진행되고 기한에 쫓겨 합의가 이루어지는 실정임. 또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우리 헌법의 규정에 맞 추어 예산안 등의 의결이 늦어지지 않도록 도입한 자동 부의 제도이 지만, 정해진 위원회 심사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자동으 로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규정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 안을 제외하고 예산안에 연동되는 법률안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 며 정기회 기간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연동되는 법률안만 상정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연동되는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 로써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을 근거로 한 세법개정안의 합의 유도를 방지하고 나아가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 ·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84조, 제85조의3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의원이나 정부가 예산안 처리에 연동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예산안 연동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예산안 연동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예산안 연동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예산안 연동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1.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 중 국회예산정책 처의 추계 결과 다음 연도 세수의 증감효과가 300억 원 이상인 법률안
- 2. 다음 연도의 세출예산안 처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안
- 3. 재정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법률안
- ⑨ 의장은 제8항에 따른 예산안 연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제85조의3제1항 중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를 "예산안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와 연동되는 법률안에 한정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2제10항 중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를 "예산안등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 ⑦ (생	략)		심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⑧ 의원이나 정부가 예산안 처
			리에 연동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안
			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예산안 연동 법률안 여부를 표
			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
			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예산
			안 연동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예산안 연동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대
			<u>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u>
			을 예산안 연동 법률안으로 지
			정된 것으로 본다.
			1.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 중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 다음
			연도 세수의 증감효과가 300
			억 원 이상인 법률안
			2. 다음 연도의 세출예산안 처
			리와 직접 관련된 법률안
			3. 재정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신 설>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⑨ 의장은 제8항에 따른 예산 안 연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②

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 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 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 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 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 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 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 | <삭 제> 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 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시기) (생 략)

<삭 제>

<삭 제>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신 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⑨ (생 략)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①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②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 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 와 연동되는 법률안에 한정한 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 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예산안등에